

작성 방법

번호	기재항목	기재 방법
1	수출자	◆ ‘생산자’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기재항목
2	원산지 포괄증명 기간	◆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(작성)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
3	생산자	◆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
4	수입자	◆ 물품의 수입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기재
5	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	◆ ‘HS품목번호’, ‘품명’, ‘원산지국가’는 필수기재항목 ◆ ‘품명·규격’, ‘수량·단위’는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
6	특이사항	◆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
7	서명 등	◆ ‘작성자 성명’, ‘증명일자’는 필수기재항목

※ [참조]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[협정문 제6.15조 2항]

- ① 증명인의 성명(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)
- ② 상품의 수입자(아는 경우에 한한다.)
- ③ 상품의 수출자(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.)
- ④ 상품의 생산자(아는 경우에 한한다.)
-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
-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
- ⑦ 증명일자
- ⑧ 증명서 유효기간(포괄증명의 경우)